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19.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이정인 의원 발의 】

의안번호 557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이정인 의원 발의(찬성자 22명)

나. 제안일 : 2019. 3. 29.

다. 회부일 : 2019. 4. 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 공연장 등에서 이들을 위한 좌석 모두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 현행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공연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sup>1)</sup>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관람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개정안의 내용(안 제4조제1항)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등 관람석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

1)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p>조에서 정한 <u>장애인 등 관람석의 50 퍼센트 이상</u>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u>장애인 등의 관람석</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

## 나. 서울시 최적관람석 운영 현황

### (1) 최적관람석 설치 배경

- 현행법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관람석으로 구분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sup>2)</sup>).
-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 등의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관람편의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음.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b>1퍼센트 이상</b>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상의 최적관람석은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② 관람하기 좋은 위치로 정의 하고 있는데,
  - ①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②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3))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으로 2019년 4월 기준 총 22개소임.

---

### 3)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번	시설명	소재지
1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대극장	광진구 구면천로	12	블루스퀘어 뮤지컬 공연장	용산구 이태원로
2	성북청소년수련관	성북구 장위동	13	블루스퀘어 콘서트 공연장	용산구 이태원로
3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강북구 월계로	14	삼청각	성북구 대사관로
4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강북구 월계로	15	서울돈화문 국악당	종로구 율곡로
5	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도봉구 노해로	16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	마포구 증산로
6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서로	17	삼일로창고극장	종구 삼일대로
7	세종체임버홀	종로구 세종로	18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도봉구 마들로
8	세종M씨어터	종로구 세종로	19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월드컵로
9	세종S씨어터	종로구 세종로	20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마포구 월드컵로
1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종로구 세종로	21	고척 스카이돔	구로구 경인로
11	남산국악당	종구 필동	22	장충체육관	종구 동호로 241

\*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19.4월 기준)

-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 대상 시설의 장애인 등의 관람석 414석. 최적관람석 수도 414석으로 현재 조례상의 최적관람석 설치 좌석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바, 장애인석을 모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자립지원과)는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 관람석의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연장 등 관리 부서 또한 대부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연번	시 설 명	전체객석	장애인석	최적 관람석	최적관람석/ 장애인석
		120,799	414	414	100%
1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대극장	303	3	3	100%
2	성북청소년수련관	169	3	3	100%
3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301	3	3	100%
4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283	3	3	100%
5	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	188	4	4	100%
6	목동청소년수련관	337	4	4	100%
7	세종체임버홀	443	5	5	100%
8	세종M씨어터	609	7	7	100%
9	세종S씨어터	320	4	4	100%
10	세종문화회관대극장	3022	20	20	100%
11	남산국악당	302	16	16	100%
12	블루스퀘어뮤지컬 공연장	1,767	18	18	100%
13	블루스퀘어콘서트 공연장	1,400	14	14	100%

14	삼청각	206	4	4	100%
15	서울돈화문국악당	140	2	2	100%
16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	300	접이식 의자	3	100%
17	삼일로창고극장	60	가변형 객석	1	100%
18	플랫폼 창동 61 레드박스	200	접이식 의자	2	100%
19	서울월드컵경기장	66,704	186	186	100%
20	서울월드컵경기장(보조)	1,020	20	20	100%
21	고척 스카이돔	16,784	38	38	100%
22	장충체육관	4,507	40	40	100%

\*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19.4월 기준)

### 3 종합 검토 의견

-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안전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위치가 확보된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재 설치된 최적관람석을 축소하지 않고 보장하며, 앞으로 신축 예상되는 공연장의 최적관람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실질적인 관람편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상에 최적관람석을 정의하고 있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앞으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례를 통한 장애인등의 실질적인 관람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영 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부설비	장애인차량구역	주출입부높이차이제거	충돌부(문)	복도	계단 또는 동승기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전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로 및 안내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절전대·차연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인자부 등 유희용 휴게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6. (생략)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경 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